

# 법에 대한 생각

Thinking about the law

글. 임형남 · 본지 편집위원

사람을 살리는 법이 있고 사람을 옥죄는 법이 있습니다. 또한 흘러간 옛 노래 같은 법도 있습니다. 방법이나 방편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규범으로서의 법 말입니다.

건축사와 법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물론 법을 위해 건축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사는 건축물을 짓기 위해 존재하고 법은 그 건축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여과하는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사들은 설계를 시작할 때 땅에 대해 조사와 더불어 법을 제일 먼저 검토하고 여러 가지 법적 규제와 허용한계를 측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법은 무척 촘촘하고 복잡합니다. 가끔은 강조점이 이동하여 법이 건축물 위에, 건축사의 창조적인 발상 위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법이란 단순하고 명쾌하며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고 그로인해 내가 하는 행위가 사회 규범에 적합하지 크게 벗어나는지 알 수 없다면 그 법은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법들이 도통 알아먹을 수 없는 수 십차 방정식처럼 어렵고 또한 까다롭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저런 법위에 또 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새로 개정되고 바뀌는 법들을 보고 있노라면 현기증이 날 정도죠.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요.

더군다나 법의 위계도 엉망입니다. 일선 지자체에서 임의로 만들어진 하위 법이나 조례들이 헌법이나 민법에 보장된 여러 가지 권리를 종종 제한합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 따져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 맘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규제를 들이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근거를 물어보면 '내규'라고 얼버무리기도 합니다. 질서를 위해 감독하고 지도해야 할 일선 공무원들이 스스로 혼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법이라는 것이 권위가 없어집니다. 일관성이 없이 호통을 치는 가장이 혹은 지도자가 권위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간혹 흘러간 옛 노래 같은 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에 나와 있는 "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한다"는 규정입니다.

반미터 즉, 50센티미터 이격은 어떤 의미일까요. 잘 알다시피 예전의 주거의 형태에서 나온 규정입니다. 지붕의 처마길이가 보통 50센티미터이고 집이 경계선에 바짝 붙어 지을 경우 지붕이 대지경계선을 넘게 뒀을 때 따라 이웃 간의 분쟁에 대한 대비로 만든 조항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 요즘은 '슬라브 집' 즉 평지붕으로 된 집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경우 50센티미터 이격은 큰 의미가 없고 단지 집과 집 사이 고양이, 쥐들의 통로가 되던지 쓰레기가 넘쳐나는 버려지는 땅이 되고 있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크게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취지나 시대의 변화는 전혀 고려치 않고 이격거리만 금과옥조로 받치고 있습니다. 어디 이 뿐이겠습니까. 이야기하다보면 밤을 새워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합니다. 사회의 흐름과 시대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 법규나 규칙에 대해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정당하게 조정할 것을 요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역할이고 건축사의 책무 아닐까요.